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3일, 주호영의원 등 3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1. 2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28.)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주호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현준)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정의에 주거시설 추가(안 제2조제5호)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상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정의에 따를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종전부지에 관광시설,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안 제2조는 이를 수정하여 관광시설, 상업시설, 첨단산업시설 외에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하여 현행법에 비하여 주거기능을 추가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u>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u> 을 말한다. 6.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u> ----- -----. 6. ~ 8. (현행과 같음) 부 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으로 함께 이전하려는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¹⁾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²⁾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새로운 군 공항(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기존 군 공항을 양여하여 군 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을 말함.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이루어지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³⁾에게 기존 군 공항이 위치한 종전부지가 양여될 것인데,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종전부지 개발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중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⁴⁾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음.

즉, 중전부지 개발사업의 예시로서, ①관광시설의 설치, ②상업시설의 설치, ③산업단지 개발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나, 지난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심의('23.8.) 시 중전부지 토지이용계획에 주거기능을 포함시켰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정의에 더하여 주거시설의 설치를 중전부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 제5조⁵⁾에 따라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조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중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시개발사업⁶⁾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을 의미하는 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주거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 이미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주거시설의 설치도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본 사업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 시, 주거기능이 포함된 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 내용으로 이미 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의에도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부지 용도에 주거기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

6)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는 입장임.

2) 대구광역시

종전부지의 도시 비전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 문구로 수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2.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택지 조성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이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따르도록 규정⁷⁾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⁸⁾은 이주대책사업으로 이주택지 조성을 예시하고 있음.

안 제7조는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의 예시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이주택지의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8)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② (생략)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공공임대주택⁹⁾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또는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¹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함.

현재 대구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내에 42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중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주대책과 관련한 구체성이 미흡한바, 개정안은 그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¹¹⁾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한 특별법」에 따를 때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수립한 군 공항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주대책으로 이주택지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주택의 공급 중 선택하도록 향후 반영할 계획이며,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임.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가능 여부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통해 조성됨.

안 제7조제4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용도12)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12)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이주택지 조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가능 여부

또한, 안 제7조제4항은 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주택지¹³⁾의 조성에 있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이주택지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이주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주택지의 조성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달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부지 편입세대가 426세대에 이르는 점과 대구시가 수립('22.8.)한 군 공항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주대책으로 이주택지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주택의 공급 중 선택하도록 향후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

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등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또한,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 목적(「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이며,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되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바,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은 주택기금 지원취지에 부합하나, 한정된 재원 하에서 특정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이주택지 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분양받는 이주민이 부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이주택지 조성에 지원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임.

2) 기획재정부

이주비용에 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층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기금을 특정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택지조성사업은 상업용지, 도로 등 인프라 비용도 포함되어 주택공급을 위한 기금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점, 이주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이 사용된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대구광역시

이주대책 중 주택공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적자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안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14)에 따르면, 주택

14)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계정의 경우 대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반 시설 설치, 도시계정의 경우 도시재정비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이 그 용도에 포함되어 있어 이주택지 조성사업도 주택도시기금의 취지에 부합함.

3. 공항개발사업 위탁(안 제8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8조제1항¹⁵⁾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 즉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8조의2 제1항은 공항개발사업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에 더해 제2항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①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 제14조제4호¹⁶⁾) 또는 ②해당 법인에 출자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5)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6)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의 시행을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4조제4호의 법인에 출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시키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¹⁷⁾ 상 공항개발사업, 즉 대구국제공항의 이전은 국토교

17)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중

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건설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민·군 공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활주로, 기반시설 등 공동사용시설을 통합적으로 설계·시공하여 양 공항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공항개발사업(대구국제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군 통합공항의 정합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임.¹⁸⁾

다만, 안 제8조의2 제2항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①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8) 현행법 제8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그동안 공항개발사업이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군 공항 이전사업뿐만 아니라 공항개발사업의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분의 50을 초과, 제14조제4호¹⁹⁾) 또는 ②해당 법인에 출자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같이 향후 사업 추진상황이나 사업자 구성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광역시 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6월 7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통합이전 하는 사업으로,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활주로, 기반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공항

19)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시설 설계·시공의 정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사용 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계·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현행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법인은 아직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대행자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통합설계·시공 시 사업대행 주체를 동 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대행자를 포함하여 공항개발·운영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구광역시

민간공항 및 군 공항 접속 시공부의 동일한 품질 확보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하자 발생 시 확실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하고, 특수목적법인 및 출자기관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4. 특례 조항(안 제9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9조의2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의 규정은 특례 조항으로, 안 제9조의2(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는 「공항시설법」에 따르는 경우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나 이를 기본계획 고시 단계로 앞당기려는 내용임.

다음으로, 안 제29조의2(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관하여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안 제29조의3(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의 경우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해제 가능총량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총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 의무 또는 보전부담금 납부 의무 중 하나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의4(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특성상 용도 폐지될 기존 군 공항과 가치가 동등한 대체시설(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면 용도 폐지된 기존 군 공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될 것인데,

이러한 양여재산(용도 폐지된 군 공항)을 평가할 때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 또는 폐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조의2(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9조의2(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① <u>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u> ② <u>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u> <u>제29조의3(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 <u>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의 조성·공급 및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설·공급을 하지 아니한다.</u> <u>③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u>

현행	개정안
<신설>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의무 이행을 면제한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9조의4(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제3호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현행법 제9조제2항²⁰⁾은 실시계획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를

20)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5조제3항²¹⁾은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 추진 시 「공항시설법」 제7조²²⁾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권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법 제12조²³⁾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22)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3) 「공항시설법」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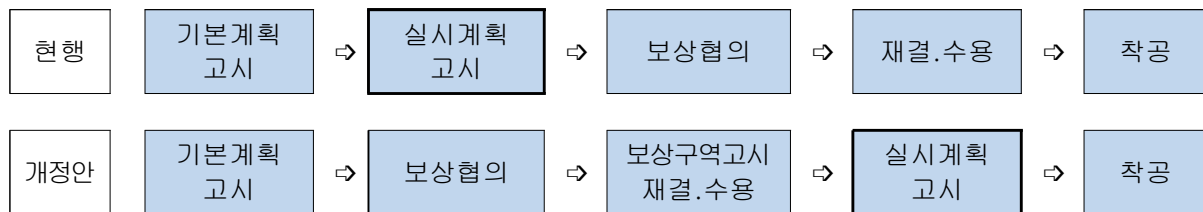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등의 세목 사항 포함 및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사실 통보를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로 당기는 법적 효과가 나타나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신청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게 되는바, 조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진절차 비교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 등이 앞당겨지는 경우 소유자 미동의에 따른 보상율의 저조 문제 해결, 보상의 장기화 방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20.8.),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지가가

상승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조기보상이 가능해지는 경우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같이 공항개발 시 보상절차를 실시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 단계로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117951호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53호, 최인호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의 의제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의 별표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되어야 하는바,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²⁴⁾이 필요함.

특히, 「토지보상법」 제4조의²⁵⁾는 이와 같은 특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관한 개정안이 별도로 심사되어야 할 것임²⁶⁾.

관련하여 현재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므로, 「토지보상법」의 개정과 맞추어 해당 조문의 시행일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재정법」 제37조²⁷⁾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투자사

24)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5)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294호, 2023.5.25.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90호, 2024.7.4.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한편, 본 개정안 상 특례 관련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임.

27)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시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즉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²⁸⁾는 지방채 발행 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8)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협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대통령령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의2²⁹⁾는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험 수준을 평가·판단하여 재정위기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투자심사 제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재정위기단체 지정 제도 등으로 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방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칫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상 제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 하에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³⁰⁾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9)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가 지난 2017년 54.2%에서 2022년 49.6%, 2023년 48.1%로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제도들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재정법」 제11조의2³¹⁾는 지방채의 발행 근거를 「지방재정법」 및 해당 조항에 따른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 개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3. 수도권외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31)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³²⁾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³³⁾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에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장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3-5-2. 해제가능총량의 설정

- (1)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하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등을 받아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자문을 통해 해제가능총량의 상한(上限) 및 사용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2) 해제가능총량은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추정된 목표연도까지의 개발수요에 근거하여 설정하되 개발수요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공간구조, 가용토지 현황 및 녹지체계 유지·관리방안 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3)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이하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과 국책사업(국가의 중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을 말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립권자 간에 합의를 통해 시·도 단위(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수 있다.
- (5) 개발제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는 면적만큼을 이미 해제된 면적과 상계하여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잔여 해제가능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1. (2)의 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29조의3 제1항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임.

이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동일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상 개념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의무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³⁴⁾은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조정·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해당 훈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절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垠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제1절 조정대상지역

(3)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 ① 해제대상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영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무기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당해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군의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한한다)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전체 세대수 대비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함.

한편, 「도시개발법」 제21조의3³⁵⁾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35)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행자(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공급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서민 주거안정 및 세입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의 본래 취지 및 군부대 이전 등 다른 기부대양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훼손지 복구의무 및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³⁶⁾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계획 등 관리방안을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는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훼손지 복구의무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동조 제6항³⁷⁾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되, 동법 제21조³⁸⁾에서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는 훼손지 복구의무 또는 보전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37)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8)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부담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³⁹⁾으로 추진됨.

기부대양여 방식이⁴⁰⁾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용도폐지된 재산(기존 군 공항 부지)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것임.

3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유재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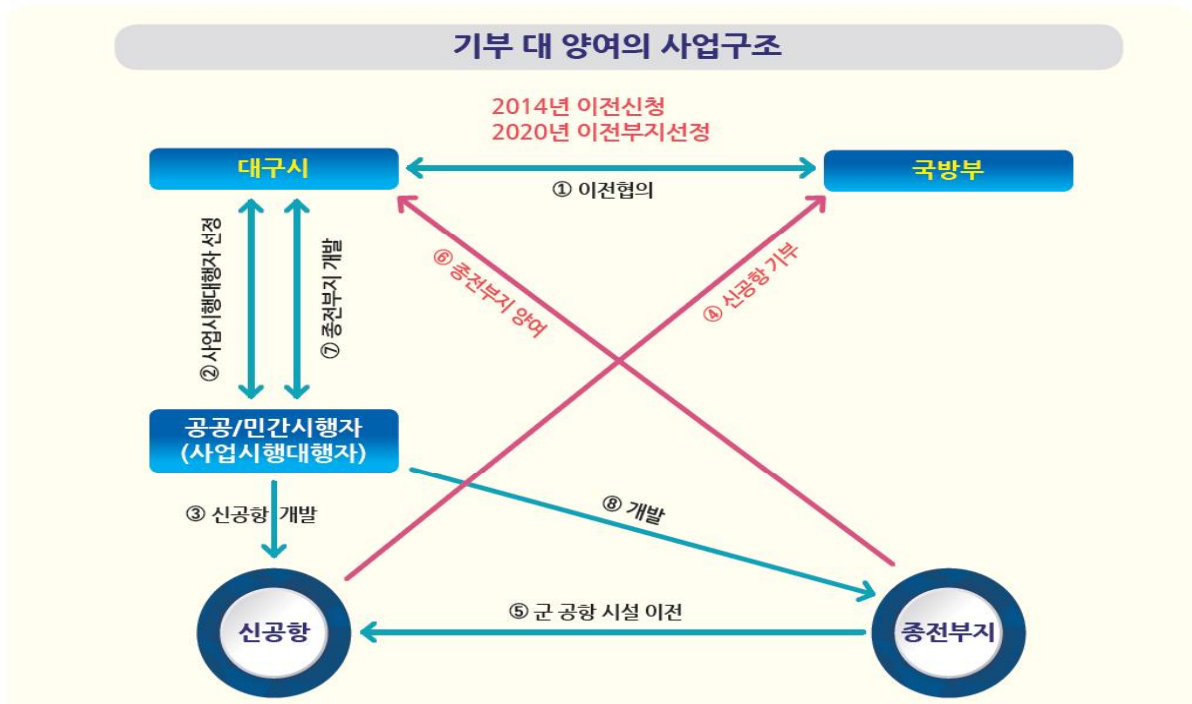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0)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재산(새로운 군 공항)과 양여재산(용도폐지된 기존 군 공항)은 그 가치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만일 양여재산의 가치가 기부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고로 귀속됨⁴¹⁾.

양여재산의 평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훈령⁴²⁾에 따르

41)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4조(사업대상)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 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42)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

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이에 따르면 철거·폐기대상인 건축물, 임목죽, 장비 등이 양여재산 평가 시 포함됨.

이로 인하여 양여재산의 가치가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획재정부의 ‘기부대 양여 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방법 연구’에서는 양여재산 중 건물, 공작물, 임목죽의 경우 철거 및 폐기대상으로 양여재산 가액 평가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가액만을 양여재산 평가 범위로 국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시하였음⁴³⁾.

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 ③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 ⑦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43) 기획재정부, 기부대 양여 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방법 연구(2019), p.42~44

이에 안 제29조의4는 양여재산(용도 폐지된 기존 군 공항)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 하도록 하여 양여재산 과다계상 우려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중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양여재산 평가에 대한 특례 신설로 인하여 양여재산 가치가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①토지 등 수용에 관한 특례

해당 특례는 토지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20.8.),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등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의 지가가 상승 중임을 고려할 때, 조기보상을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또한, 군 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군 공항별 보상시점이 크게 차이날 경우 보상액 관련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개정안에 동의함.

②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이는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관련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 및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4.2.)에 따른 제도개선('24.4.,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역전략사업은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가 가능하므로 별도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안 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 면제의 경우 이는 서민 주거안정 및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며, 군부대 이전 등 다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고려할 때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항의 훼손지 복구 의무 및 보전부담금 면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또는 보전부담금 의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훼손행위의 반대급부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상 의무로서 해당 사업만 의무 면제 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유사 건의 채도 등으로 동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④양여재산 평가 특례

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재산평가기준 관련 사항으로, 국방부는 타 군 시설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면제와 관련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타 지자체 및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특별법상 별도 특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령 상의 “수시심사” 및 “협의면제”를 통해 투자심사 신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채 발행 특례 관련 타법⁴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적용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거나 재정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고, 재정 건전화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권고하는 제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 해당 지자체의 채무로서,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되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기획재정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양여재산 평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은 토지 수용 시 토지 위 정

4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착물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철거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⁴⁵⁾,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군 공항을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규정되고 있는 토지 보상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안에 따라 양여재산 규모가 축소되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의 등가관계가 깨지는 경우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위 정착물과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국방부

종전부지 지상의 건축물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도폐지된 재산과 대체시설의 등가교환이라는 기부대양여의 핵심 원칙과 정면으로 상충되며, 양여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대체시설의 질적·양적 수준에 영향을 미쳐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음.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또한, 군공항이전법은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차액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양여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차액 규모도 축소되어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삭제될 위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이미 양여재산 가액과 기부재산 가액을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정안에 따라 양여재산가액이 하락한다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불일치로 합의각서 변경체결 및 기재부 기부대양여 재심의가 필요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큼.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양여재산 감소액은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그리고 철거비 공제의 경우, 철거비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 이후 대로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한 철거라는 점에서 그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5) 대구광역시

①토지 등 수용에 관한 특례

2029년 조기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②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미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부대양여 심의('23.8.)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인한바, 투자심사 절차는 불필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14조원 이상 대규모 국가 안보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공적자금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및 재정 위기 단체 지정 면제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③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대상에는 국가균형발전 사업, 국가안보 효과가 큰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연계된 종전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대한 예외를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 제도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선정 후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한 점, 군사시설은 보안상 환경등급 측정 불가로 대체자 지정이 어려운 점을 고

려할 때 애로가 있음.

또한, 양여재산 평가 시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된 사항을 평가하므로, 공공임대주택 확보, 훼손지 복구, 보전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 이중 부담이므로 경감이 필요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⁴⁶⁾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동의함.

④ 양여재산 평가 특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양여재산을 평가하는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므로, 기존 시설물 평가액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양여재산 평가 감소액 부분은 가처분 용지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가치 향상이 가능하므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4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감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⁴⁷⁾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변경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된 계획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 제1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4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수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안 제16조제5항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현행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수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수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된 계획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을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5제3항⁴⁸⁾은 개정하지 않고 있어 의도하는 바가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15조제3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제16조⁴⁹⁾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미비한바, 안 제16조제5항은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요청 없이도 사업시행자가 필요 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1항에 따라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동의하는 입장임.

또한, 현행 법률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절차가 없어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대구광역시

개정안에 동의함.

-
- 49)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가의 지원(안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주체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대상은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음.

안 제19조제2항은 지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종전부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도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①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기부하려는 대체시설(군 공항) 구축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기존 군 공항)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제2항은 국가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제3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융자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 규모,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생략)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u> 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u>종전부지 주변지역 내</u>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u>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u> ----- ----- <u>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u> ----- -----.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생략)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u>지원할 수 있다.</u>	② ----- ----- ----- ----- ----- ----- ----- ----- ----- - <u>지원한다.</u>
③ <u>제2항</u> 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제1항</u> 및 <u>제2항</u>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행법 제19조제2항은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원주체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대상범위를 종전부지 주변 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종전부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 제19조제2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따른 성공적인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일반적이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현행법 제14조⁵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지원주체로 추가하는 것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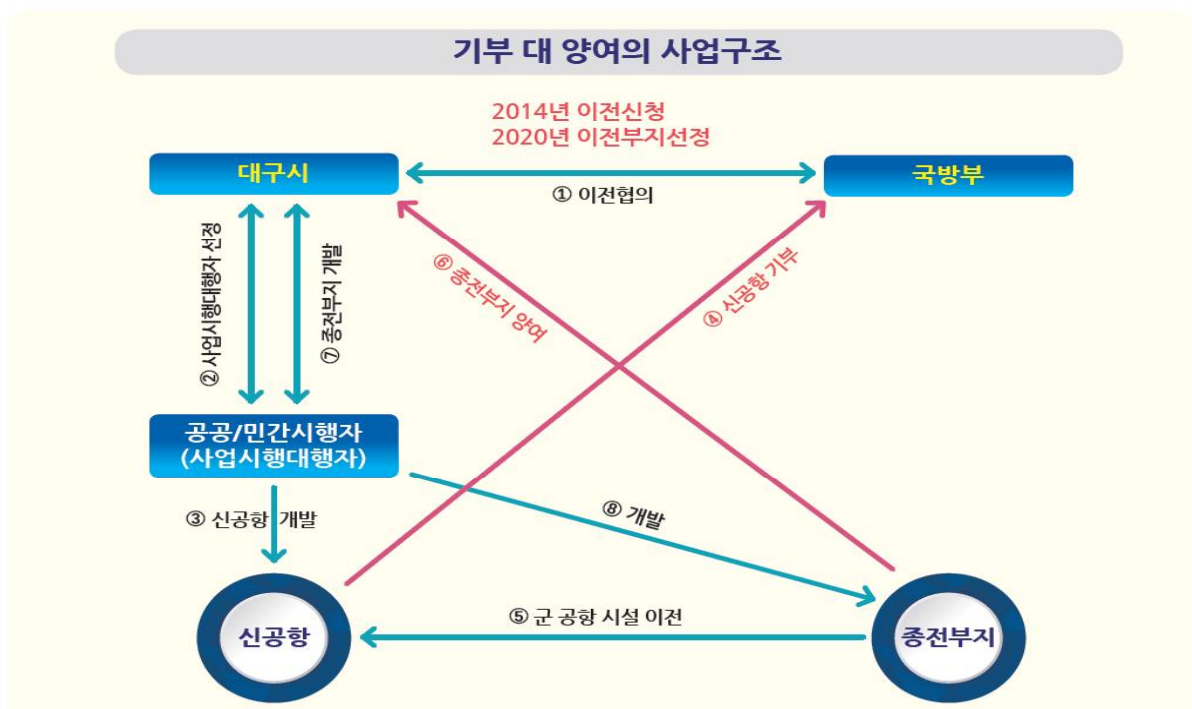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2)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 초과 시 국가의 지원 의무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됨.

기부대양여 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용도폐지된 재산(기존 군 공항 부지)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것임.



이처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최초로 규정하되, 재량규정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모든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임.

개정안은 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국가의 지원 의무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바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 다른 사업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안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지원주체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양여받은 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종전부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사항으로 법률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안 제20조의 정부의 재정지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사항으로, 국방부는 타 군 시설 사업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기획재정부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교환이라는 기부대양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양여재산 >

종전부지 가치

≤

< 기부재산 >

이전사업비

+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또한,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등가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국

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자체장의 종전부지 가치향상에 대한 유인 감소, 이전 및 지원사업의 규모·사업비 초과 요구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타 기부대양여 사업에 유사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국방부

지난 2023년 4월 동법 제정 당시, 의원발의안(주호영 의원안)은 국비 지원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예상 부작용에 관한 국회의 논의 및 관계부처(국방부, 기재부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비지원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입법경과를 고려할 때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규정을 충분히 운용해 본 뒤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 당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제20조제2항은 국비투입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대양여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최초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재정부담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여야 하고,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는 경우, 기부 대양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양여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사업비 절감 노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기부대양여로 진행되는 다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도 동일한 요구가 제기되어 군 주둔 안정성이 악화되고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됨.

4) 대구광역시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국가안보 핵심사업인 군 공항 이전·건설에 투입된 사업비 회수를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관련 개별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바, 지원가능 여부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정법에서 국가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 초과사업비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지를 명확히 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은 필요함.

동법에 기부대양여사업 예외사항(초과사업비 국가지원)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부담이 추가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므로 개정안에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화에 동의함. 특히, 이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참여의향자들의 선결 요구 사항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동 개정안은 투자심사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 양여재산 평가에 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가. 이주지원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택지의 조성은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을 단순 지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나. 공항개발사업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며, 사업대행자의 범위를 수정하고, 위탁 전 협의를 추가함(안 제8조의2 삭제 및 제8조).

다.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삭제).

라. 투자심사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를 삭제함(안 제29의2).

마.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부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급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포함한다)를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8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개발사업시행자는”을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개발사업시행자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중 “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 중 “지원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항”으로 한다.

안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생략)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u>----- . 이 경우</u> <u>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u>	③ ----- ----- ----- ----- ----- ----- ----- ----- ----- ----- ----- ----- ----- ----- ----- <u>----- . 이 경우</u> <u>「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u> ----- ----- -----

		----- ----- ----- -----.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 급 및 「국방·군 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이주 택지 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 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우선적으로 지 원할 수 있다.	④ ----- ----- -----공 급을 위한 사업--- -----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 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 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 항 시 설 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제8조(통합신공항 건 설사업의 시행자)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신공항 건 설사업의 시행자) ① ----- ----- ----- ----- ----- ----- -----

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다만,
중전부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군 공
항 이전사업을 대
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통합신공항 건
설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하
거나 공동으로 시
행할 수 있다.

④ 중전부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제8조의2(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
개발사업 일부의
시행 제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업을 포함
한다)를 대행할 사
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
항에 따라 위탁받
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u>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u>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1. <u>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u> 2. <u>제14조제4호의 법인에 출자한 자</u>	
제15조(중전부지 개발 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u>중전부지</u> 지방	제15조(중전부지 개발 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전부지 개발 계획의 수립)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직접 또는 중전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u>부지</u>----- ----- ----- -----.
④ 제3항에 따라 개 발계획을 변경할 경 우 그 절차에 관하여 는 제1항 후단 및 제 2항을 준용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 치 및 우선지원 등)	④ <u>개발사업시행자</u> <u>간</u>----- ----- ----- -----. ----- ----- ----- -----.	④ 제3항에 따라---- ----- ----- -----. ----- ----- ----- -----.
① (생 략) ② <u>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u>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 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u>종전부지 주변지역 내</u> 기반시 설 설치를 우선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 치 및 우선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 또는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u>-- ----- ----- ----- ----- --<u>종전부지 및 종전 부지 주변지역 내</u>--- ----- ----- -----.	제19조(기반시설의 설 치 및 우선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u>----- ----- ----- ----- -----<u>종전부지 주변지역 내</u>----- ----- -----.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생략)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u>지원할 수 있다.</u>	② ----- ----- ----- ----- ----- ----- ----- ----- ----- ----- ----- ----- ----- <u>지원한다.</u>	② ----- ----- ----- ----- ----- ----- ----- ----- ----- ----- ----- ----- ----- <u>지원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 ----- ----- <u>제29조의2(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①</u>	③ <u>제2항-</u> ----- ----- ----- ----- ----- <u>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u>

<신 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의3(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부

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의 조성·공급 및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설·공

급을 하지 아니한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한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 설>

제29조의4(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 개발사업

<삭 제>

	<u>이 시행되는 지역</u> <u>에서는 「국유재산</u> <u>법」 제55조제1항</u> <u>제3호 및 「군 공</u> <u>항 이전 및 지원에</u> <u>관한 특별법」 제9</u> <u>조에 따른 용도 폐</u> <u>지된 재산을 평가</u> <u>할 때 종전부지 개</u> <u>발사업이 시행되는</u> <u>지역 내 건축물, 공</u> <u>작물, 임목죽 및 장</u> <u>비 등 토지 이외의</u> <u>재산은 평가대상에</u> <u>서 제외하고 그 철</u> <u>거비를 공제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단서 신설></u>	부칙 ----- -----. <u>다</u> <u>만, 제7조제3항·제</u> <u>4항, 제8조제1항·</u> <u>제3항·제4항 및</u> <u>제16조제5항의 개</u> <u>정규정은 공포 후</u> <u>3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를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로 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개발사업시행자는”을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u>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u>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u>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u>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생략)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u><후단 신설></u>	<u>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u>

<신 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
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
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
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 설>

<신 설>

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
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
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
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
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u>개발사업시행자는</u>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개발사업시행자는</u> 직접 또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